

집중이수제 운영 규정

제정 2022.10.04. 개정 2024.07.23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칙 제9조에 따른 집중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집중이수제란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학점 당 이수시간(1학점 당 15시간 기준)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개설)

- ① 개설교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학기개시 전 집중이수제 운영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③ 평일 주·야간시간에 한하여 개설가능하며, 주말 수업의 개설은 제한한다. 다만, 토요일의 경우 수강대상 학생이 동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학과에서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위원회에서 적절성을 심의한다.

제4조 (운영 및 제한)

- ① 집중이수제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에 해당수업이 집중이수제임을 명시하고 수업내용 및 운영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② 교원의 집중이수제 개설 및 참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.(공통 강의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외)<개정 2024.07.23.>
 1. 학과별, 학기별 2과목 이내
 2.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
제5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10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7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제1호]

집중이수제 운영계획서					
교과목명		학 기	년 학기	이수구분	
개 설	학기 중 / 방학 중	학 점		시 수	
운영 목적 (개설사유)	강의계획서에 성적평가 / 세부 수업내용 / 총 시간 세부적으로 기입				
신청 일시	운영 일시		운영 기간		
	예) 9.18.(월) 5~8교시		예) 8주 12주 등		
일자별 운영내용	일자	시간	수업내용		기타
	총 시간				
운영효과					
「집중이수제 운영규정」에 따라 집중이수제 교과목으로 위와 같이 개설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담당교원 계열(학과)명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계열(학과)장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교무처장 귀하					
※ 구비(제출) 서류 : 강의계획서 첨부					